

#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분당구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1구역)
- 나. 공사현장: 분당구 관내(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등)
- 다. 공사내용: 흙관부설 및 접합, 맨홀 보수/신설,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180일) 동안
- 마. 기초금액: 금170,000,000원(추정가격 154,545,455원 부가가치세 15,454,545원)
- 바. 공고기간: 2026. 8. 28.(금) ~ 9. 4.(금)
-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31.(월) 10:00 ~ 9. 4.(금) 10:00
- 아. 개찰(입찰)집행일시: 2026. 9. 4.(금) 11:00
-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 차. 현장설명: 생략

## 2.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견적서 제출 방식

-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미등록업체는 입찰불가)

-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4.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다. 수의계약 배제사유(각서 징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 바.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 5.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6. 입찰참가 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약약을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br>보험료 | 국민건강<br>보험료 | 퇴직공제<br>부금비 | 노인장기<br>요양보험료 | 산업안전<br>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 3,135,373 원 | 2,372,982 원 | 1,518,180 원 | 311,809 원     | 3,114,640 원   | - 원   | 2,502,830 원 | 12,955,814 원 |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의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람과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7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증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2)
- 공사내용 관련 :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하천관리팀(☎ 031-729-737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전화 1588-0800)
- 관련 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 1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계약상대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제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2026년 하반기 분당구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1구역)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 평가항목                   | 수급인 평가기준<br>(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br>수립여부<br>(O,X,해당없음) | (준공시)<br>이행여부<br>(O,X,해당없음) |
|------------------------|------------------------------------------------------------------------------------------------------------------------------------------------------------------------------------|-----------------------------|-----------------------------|
| <b>□ 안전보건 관리체제</b>     |                                                                                                                                                                                    |                             |                             |
|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br>※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2. 계획수립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br>※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                           |
| <b>□ 실행수준</b>          |                                                                                                                                                                                    |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a href="https://kras.kosha.or.kr">https://kras.kosha.or.kr</a> )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br>※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 "                           |
| 8. 안전작업허가<br>(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b>□ 운영관리</b>          |                                                                                                                                                                                    |                             |                             |
| 9. 연·차·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O X 해당없음                    | O X 해당없음                    |
| 10. 위험물질 및 설비<br>(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                           |
| 12. 안전관리비용<br>(필요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br>※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                           |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91)